제59회 설계변경심의 의견서

공 사 명	이태원로 191~134간 하수관로 개량공사
일 시	2016년 12월 9일(금) 14:00~14:35

1. 제경비의 적정성 검토

○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, 기타경비는 16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재검토 요망

○ 용역 및 부대비용 항목은 제비율 적용 제외항목으로 수정표기

2. 단가산출의 적정성 검토

○ 동일한 폐콘크리트 운반 공종을 구분적용하였으므로 통합하여 적용

○ 일위대가 1호표 보통암깨기(무진동, 코아드릴) 공종의 용수공급 수량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재검토 필요

○ 유용토 운반에 관한 현장→적치장, 적치장→현장 단가가 상이하므로 재검토 필요

○ 하수관로 조사(GIS D/B구축) 공종이 부대공과 이전비에 중복 적용되어 수정 필요

3. 기타사항

○ 토적표, 내역구성항목은 오인이 없도록 수정요망

○ 공기압시험(∅900, ∅1200)은 추후 정산 요망

심 의 위 원 회	심의위원장 : 공사감독2처장	남 궁 석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1처	전 우 열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1처	이 문 기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1처	김 홍 정
	간 사 : 공사감독1처	임 준 영